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9. 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8월 24일

나. 발 의 자 : 강복희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복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카 바이러스, 뎅기열 등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한 구민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맞추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소독 의무, 소독 실시 권고 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교육 및 홍보 (안 제5조)
-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, 시설지원 (안 제6조 ~ 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이 제정 조례안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증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건 안전을 위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, 그 예방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 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와, 소독 실시 권고를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감염병 치료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, 민간의료인력에 대한 소요 경비지원과 시설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.

- 검토결과,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인해 중동호흡기 증후군(MERS),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, 신속하고 효율적 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무 소독 실시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한

소독 실시 권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

-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관련 활동 단체인 동자울 방역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수정내용

-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”을 “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울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호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9. 1.
제안자 : 마숙란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의무 소독 실시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한 소독 실시 권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
-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관련 활동 단체인 동자울 방역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

2. 수정내용

-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”을 “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울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”을 “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율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소독 실시 권고) 구청장은 <u>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</u>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관리·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.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4조(소독 실시 권고)① ---- <u>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울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강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7년 8월 24일

발 의 자: 강북희 의원 외 5 명

1. 제안이유

지카 바이러스, 뎅기열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라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맞추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소독의무, 소독 실시 권고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교육 및 홍보(안 제5조)
- 라.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, 시설지원(안 제6조 ~ 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.
2. “감염병환자”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동자울방역단”이란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별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.

제3조(소독 의무)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
제4조(소독 실시 권고)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관리·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영등포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)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시설지원)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,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호	관 련 번호	
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17. 9. 1.
제안자 : 마숙란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의무 소독 실시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한 소독 실시 권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
-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관련 활동 단체인 동자울 방역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

2. 수정내용

-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”을 “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울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”을 “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율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소독 실시 권고) 구청장은 <u>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</u>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관리·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.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4조(소독 실시 권고)① ---- <u>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울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.
2. “감염병환자”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동자울방역단”이란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별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.

제3조(소독 의무)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
제4조(소독 실시 권고)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관리·운영하

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율 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영등포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)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시설지원)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,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